

도민이 중심  
신뢰받는 의회

2023. 11. 20.(월)  
제413회 정례회  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
베트남 호치민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  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  
산업경제위원회

# 베트남 호치민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3년 10월 24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5일

3. 제안이유

- 미·중 갈등, 국지적 전쟁, 자국 우선주의 등의 지속에 따라 글로벌 교역환경이 악화되고 대중수출이 급감함에 따라,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서 아세안의 잠재력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
- 특히, 베트남은 우리와 교역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최대의 무역 흑자국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양국의 관계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음
- 호치민은 베트남 GDP의 23%를 담당하는 경제중심지로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서도 9%(2022년)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반도체, 의료기기, 전자 등 전략산업을 공유하고 있어 교역 및 산업 간 교류 협력에 따른 실익이 큰 협력 파트너 지역이라 할 수 있음
- 특히, 호치민 우수인력 유치를 통한 도내 전략산업 핵심역량 확충, 기업인 간 교류를 통한 교역확대, 직항 개설을 통한 인적교류

확대, 충북형 스마트팜 및 충북농산물 베트남 진출 교두보로서 적극 활용하고 민선 8기 충북도정 주요 현안의 역동적 추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

- 따라서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양 지역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‘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’에 의거 베트남 호치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함

#### 4. 주요내용

- 자매결연체결 장소와 시기는
  - 충청북도 대표단이 2023년 12월경에 호치민시를 방문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함
- 자매결연협정서의 주요 내용은
  - 무역 교류 증진 및 민간투자 촉진 지원 등 경제협력 활성화
  - 농업, 항공·관광,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교류 및 우수 연구 인력 초청 유학, 교류 등 교육 연구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여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

#### 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)

##### 가. 제출배경

- 베트남은 우리나라 대(對)아세안 정책의 핵심 협력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바 작년 한국·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우호 증진과 기업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계기가 마련됨

-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4위 교역국,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3위 교역국으로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9천 개가 넘는 한국기업들이 베트남 내에서 활발한 생산활동과 함께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
- 베트남 경제중심 도시인 호치민과 교류를 통해 경제, 산업, 농업 분야의 물적·인적 자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항공, 관광산업의 발전에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

## 나. 추진현황

- ‘09~’ 23 총 28회 도내 무역사절단 호치민 방문, 시장개척 추진
  - 도내 340개기업 참가, 수출상담 260백만불, 계약금액 134백만불
- ‘23. 6. 경제부지사 ’ CICON HCMC 2023\*’ 참석 계기,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면담, 교류협력 의향 표명
  - \* 2023.06.06. ~ 06.08/호치민 웨라톤호텔/코리아CEO서밋
- ‘23. 6. 호치민시 인민위원장, 경제부지사 “2023호치민 경제포럼” 초청
- ‘23. 8. 호치민시 인민위원장 초청 지사님 명의 서한문 전달  
(2023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)
- ‘23. 9. 호치민시 인민위원장, 9월 서울방문 계기\* 면담 요청
  - \* 호치민시 인민위원장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 참석차 방한 (9.24~9.26)
- ‘23. 9. 24. 지사님, 호치민시 인민위원장 면담, 교류·협력방안 논의

## 다. 종합의견

- 「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외국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
- 「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는 자매결연체결 전에 서신교환, 상호방문, 주민, 학계, 사회단체 등 상호교환 초청 등 여러형태의 충분한 사전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건의 경우 단기간에 추진되어 주민, 학계, 사회단체 사전교류 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음
-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자매결연 체결시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해 추진되도록 하고 동 건 자매결연의 경우는 사후관리를 통해 미진한 부분이 해소되어야 할 것임